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정비〉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66호)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정비	3

I. 제안경위

2024년 9월 19일 서왕진위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수 부처에서 개별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1월, (舊)「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舊)「에너지기본법」이 현행 「에너지법」으로 변경되었고, (舊)「에너지기본법」에 규정되었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내용이 「녹색성장법」으로 이관되었음.

한편,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함에 따라 「녹색성장법」을 폐지하고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녹색성장법」이 폐지되면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조항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반영되지 않아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지는 등 입법 흠결이 지속됨.

이에 (舊)「에너지기본법」상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 기본계획” 등 관련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현행 「에너지법」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폐지 법률 인용조항 정비 등 현행법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정비

개정안은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신설하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적용 범위)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 범위)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 ----- ----- ----- ----- ----- -----
<신설>	제5조의2(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

현행	개정안
	<u>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국내외 에너지 수요과 공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u> <u>2.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u> <u>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u> <u>4.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u> <u>5. 에너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u> <u>6.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u> <u>7.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u>

현행	개정안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u>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u> 8. <u>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u> 9. <u>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u> ④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 제8조에 따른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및 에너지별 수급계획 등 에너지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고, 에너지 관련 계획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 ----- ----- ----- -----<u>기본계획의</u>----- ----- ----- ----- ----- ----- ----- -----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u>

현행	개정안
대책에 관한 사항 5. ~ 7. (생략) ③·④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 11. (생략)	<u>향상을</u>----- 5. ~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 1.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이행여부 등----- 2. ~ 11. (현행과 같음)

2010년 1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1)이 제정되면서, 「에너지 기본법」에 규정되었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내용이 “녹색성장법”으로 이관2)되었고, 「에너지기본법」은 현재

1) 국무총리실 소관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2.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3.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
4.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제규범 및 외국의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도입·개선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5.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6.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에 관한 국가안보를 강화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기본

의 「에너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음.

이후 2021년 9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녹색성장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³⁾(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녹색성장법”에 규정되어 있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제39조)’과 ‘에너지기본계획(제41조)’ 관련 조항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반영되지 않았고⁴⁾, 이에 따라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

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4)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법」에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으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726)이 발의(2020.12.18.)되어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2022.11.22.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등)되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및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법률 개정 연혁]

법 률 (제정·개정일)	주요 내용
에너지기본법 (2010.1.12.까지)	▣ 제3조(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등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시행 ▣ 제6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규정 -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녹색성장법 (2010.1.13. ~2021.9.23.)	▣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등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시행 ▣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탄소중립기본법 (2021.9.24.제정)	▣ 제3조(기본원칙)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 ▣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등 포함

이에 개정안은 舊 「에너지기본법」 또는 舊 “녹색성장법”상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현행 「에너지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입법미비를 해결하고 에너지정책 기본원칙 및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짐.

이를 통해 현행법에서는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따르는 ‘기본원칙(제5조)’, ‘지역에너지계획의 목적(제7조제1

향),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제10조제1호)’에서 이미 폐지된 舊 “녹색성장법”을 인용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으며,

각종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에 기준이 되는 ‘기본계획’의 법적근거가 부재⁵⁾한 상황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근거하여 에너지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에너지정책 및 지역에너지계획,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에너지별 수급계획 등 에너지 관련 계획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舊 녹색성장법 인용 조문]

제5조(적용 범위)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舊 녹색성장법 제39조’ 대신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부

5) 기존 법률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2019년 6월 마지막으로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음.

* 에너지기본계획 계획기간: (제1차) 2008년~2030년, (제2차) 2014년~2035년

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舊 녹색성장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기본 원칙 중 ‘에너지 자립도 향상,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한 사항’ 등 에너지분야에 특히 필요한 기본원칙이 “탄소중립 기본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률 및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서 인용하는 법률 조항 비교]

(현행) 舊 “녹색성장법” 제39조	(개정안)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2.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3.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 4.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제규범 및 외국의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도입·개선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저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6.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에 관한 국가안보를 강화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에서 인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의 기본원칙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항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에너지 복지,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현행법에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면서 에너지정책 수립 시 규정되어야 하는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둘째, 개정안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면

서 舊 “녹색성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비교할 때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빼고,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비교]

舊 “녹색성장법” 제41조	개정안 제5조의2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이용, <u>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u>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u>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u> 5. 에너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9.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별도 법률에 근거하여 에너지원별 계획

을 수립하는 체계⁶⁾가 정착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셋째, 개정안은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에너지원 구성’의 경우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급 및 계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단위 에너지계획에 포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6) 예컨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이 각각 수립·시행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